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699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4월 03일

발 의 자: 이영실, 강동길, 곽향기,
김경훈, 김성준, 김인제,
김재진, 박강산, 박수빈,
박승진, 박유진, 박춘선,
박철성, 봉양순, 송도호,
아이수루, 왕정순, 유정희,
, 이병도, 이승미, 이용균,
이원형, 임규호, 임종국,
전병주, 정준호, 최기찬,
최재란 의원(28명)

1. 제안이유

- 현재 공원 및 학교 등에 설치된 아리수음수대의 경우 해당 기관 및 용역을 통해 음수대의 유지관리를 하고 있음. 이에 철저한 위생 및 유지관리를 위해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해 아리수음수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음수대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과 음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제2항).

3. 참고사항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의 음수대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음수대 음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관리)제2항 중 시장의 음수대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과 음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